

군정에 관한 질문	1993. 5. 12 14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수 ◦ 기획실장 ◦ 문화공보실장 ◦ 내무과장 ◦ 새마을과장 ◦ 재무과장 	
군정에 관한 질문	1993. 5. 13 10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장 ◦ 환경보호과장 ◦ 가정복지과장 ◦ 산업과장 ◦ 지역경제과장 ◦ 산림과장 ◦ 건설과장 ◦ 도시과장 ◦ 주택과장 ◦ 보건소장 	

【 3 】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4. 22.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제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연구, 의결을 함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주요골자

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과 군단위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중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소관 사항임 (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개의,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기부동수인 경우 부결 (안 제4조 제5항)

다.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 5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구성 (안 제7조 제1항)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종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단위의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 사항

3.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

제 4 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3항중 “2일”을 “48시간”으로, “간사장”을 “간사”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간사장은”을 “간사는”으로 하며, 동조 제6항중 “전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의 제목 “(간사장)”을 “(간사와 서기)”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기획실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실 소속 직원중 위원회 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계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7 조 제1항중 “5”를 “15”로 한다.

제 9 조 “시행”을 “운영”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